



행정자치부

정부3.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시 주의사항 통보

1. 국회 우윤근 의원 요구자료(2016.1.14.) 관련입니다.

2.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 제3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와 부대비용에 대해 계상하고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 등은 공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가격 결정 시 철거로 발생하는 고재 등을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시?군?구(교육지원청) 및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과장), 경기도지사(총무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총무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회계과장), 서구광역시교육감(행정회계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복지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지원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재무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담당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정보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참조자

시행 회계제도과-406 (2016.01.26.) 접수 재무과-4178 (2016. 1.26.)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3544 /전송 02-2100-3527 / ybchanya95@moi.go.kr / 대시민공개